

2025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2차 통합공고

안경 제조 소공인의 역량 강화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5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1일
대구노원안경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

1. 지원개요

- 사 업 명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2개 부문)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9. 30.
- 지원금액 : 최대 5백만원 이내 / 1개사
 - ※ 자율사업 지원금액은 1개사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소공인 구매 조건부 제품화 지원사업, 소공인 공동관 선정 소공인의 경우 최대 700만원 수혜 가능
 - ※ 부가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규모 : (맞춤형 제품화 지원사업) 24개사
(제조설비 수리비 지원사업) 8개사

2. 지원내용

구분	사 업 명	지원내용	규모	접수기간
교육 자율	① 소 공 인 맞 춤 형 제 품 화 지 원 사 업	안경테(안구, 다리) 및 안경 부품(힌지, 코다리, 팁 등) 제품화 지원 - 지원공정 : 금형, 프레스 및 CNC가공, 3D 목업 (그 외 공정 지원 불가)	1개사 최대 500만원 / 24개사	'25. 5. 21. ~ 6. 10.
	② 소 공 인 제 조 설 비 수 리 비 지 원 사 업	소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조설비 부품 교체 및 수리 지원 - 기존 제조설비 부품 교체 및 수리비 지원 ※ 기존 제조설비에 없던 부분 신규 추가 및 업그레이드 불가 ※ 소프트웨어 지원 불가	1개사 최대 500만원 / 8개사	

3.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대구시 북구 노원동, 침산동 소재 안경 제조 소공인
 - 1) 본사 소재지 기준
 - 2) (규모) ‘24년 연매출액 80억 이하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3) (형태)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국세청 홈택스 주업태 제조업, 산업분류코드 C27
 - 4) 부가가치세신고서 하단 ⑤과세표준명세 : 제조업, 332000 또는 332002
- ※ 제조업(332000 또는 332002) 외에 다른 업종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24년 제조업의 매출이 다른 업종의 매출보다 높아야 함

⑤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업 태	종 목	생산요소	업종 코드	금 액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8) 제조업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332000		년 월 일	
(29)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30)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31) 수입금액 제외					북대구 세무서장 귀하	
(32)합 계					첨부서류	뒤쪽 참조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	-----	---------	------	------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자율사업 500만원 이상 수혜 불가
 - ※ 소공인 구매 조건부 제품화 지원사업, 소공인 공동관 선정 소공인의 경우 최대 700만원 수혜 가능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지원사업과 동일 건 지원 불가(중복성 검토)
- 사업 신청 일자 기준 동일 항목(제품화, 수리비 지원)으로 ‘25년 진흥원 지원사업에 2회 이상 기(既)선정된 소공인 참여 제한
- 진흥원 운영시설(아이빌, 안경테표면처리센터) 입주기업은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시, 센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과 소공인 사업장을 동시 보유한 사업장은 참여 제한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①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휴업·폐업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 ②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③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국세징수법] 제114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관세법] 제116조의 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⑤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최근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⑥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4. 추진일정

단 계	세부내용	관련 기관
사업공고 5. 21.	- 지원사업 공고(소상공인24, 진흥원 홈페이지 등) - 사업별 지원내용 안내 및 소공인 모집	센터
↓		
신청 및 접수 5. 21. ~ 6. 10.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신청 ※신청 후 사업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수 ※서류 접수 마감일에는 서류 보완이 불가하며 신청기간 이후 제출한 서류는 부적격 처리 ※사업 신청 후 신청 철회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재신청 불가 ※부득이하게 신청 내용 또는 첨부파일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센터로 사전 연락 필수	센터/ 소공인
↓		
실태조사 6. 11. ~	- 전문가를 동행한 사전 실태조사 진행(현장 방문) ※ 제조설비 수리비 지원사업에 한함	센터/ 소공인
선정평가 실태조사 이후	선정평가위원회 개최(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센터
↓		
선정 및 협약 체결 선정평가 이후	협약 체결[센터↔소공인] (센터 방문 체결)	센터/ 소공인
↓		
사업 운영 및 사업비 지급 수시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만족도 조사, 정량적 평가표 제출 ※결과보고 관련 서류 추후 전달 예정	센터/ 소공인

※ 상기 추진일정은 사업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자율사업 가점사항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율사업 최초 신청 소공인 : 가점 6점
- 센터 지원사업 수혜 소공인 중 ‘24년 지원사업 미참여 소공인 : 가점 4점
- ‘24년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교육 수료 : 가점 2점

6. 유의사항

-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
- 허위계산서 발행 등의 부당거래 행위 적발 시, 해당 사업 지원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타 제재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
- 사업 운영지침, 공고문 등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 소공인에 있음
-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요청 및 참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
- 서류 접수 마감일에는 서류 보완이 불가하며 신청기간 이후 제출한 서류는 부적격 처리
-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재신청 불가하므로 부득이하게 신청 내용 또는 첨부파일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사전 연락 필수
-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후 반드시 유선(053-350-7861~2) 연락·제출 확인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와 동일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추가, 축소)하여 진행할 경우 정산 불가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과 소공인 사업장을 동시 보유한 사업장은 참여 제한
-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 보유 시 하나의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사업계획서 추진계획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금을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한국안광화학산업진흥원 운영시설(아이빌, 안경테표면처리센터) 입주기업은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시, 센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7. 기타사항 : 상세내용은 붙임의 개별 지원사업 공고문 참고

- [공고1] 소공인 맞춤형 제품화 지원사업
- [공고2] 소공인 제조설비 수리비 지원사업

8. 문의처

사업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맞춤형 제품화 지원사업	손혜림 매니저	053-350-7862	shr@koia.or.kr
제조설비 수리비 지원사업	이은지 매니저	053-350-7861	lej@koia.or.kr